의안번호 2717

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제 출 일 2019. 10. 24.

○ 제 출 자 제 천 시 장

[제안이유]

○ 중앙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「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」가 폐지되어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[주요내용]

- 상위법에서 위원회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"위원회" 규정 내용 삭제(안 제17조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[참고사항]

{관계법령}

-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
- 「친환경농업육성법 」

{입법예고}

○ 기 간 : 2019. 9. 17. ~ 10. 7.(20일)

○ 제출의견 : 없음

[검토의견]

○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 하다고 판단됨

□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

제7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□ 친환경농업육성법

제8조(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〈개정 2001.1.26〉) ①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
- 3.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
- 4.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
- 5.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-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